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원자력안보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3. ~ 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리령 제168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9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9년 2월 28일”로 한다.

총리령 제186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2월 18일”을 “2028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18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68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9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총리령 제168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9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보팀은 <u>2026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u>2029년 2월 28일</u> -----. ②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86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86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1명은 <u>2026년 2월 17일까지</u> 존속하며, <u>2026년 2월 18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 <u>2028년 2월 17일까지</u> 존속하며, <u>2028년 2월 18일</u> ----- ----- ----- ----- -----.
---	---